

1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153호 1999. 5. 3.

개 정 이 유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가.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일반건설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무하도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1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0분의 1로 완화함.
- 마.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12인중 조합원위원 7인을 4인으로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위원을 1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등 외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공제조합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업체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사.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실적금액을 업종별로 5천만원 내지 6억원에서 1억원 내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명목상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수주질서의 문란과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잔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공제조합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차. 전문건설업종중 시공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을 통합·단순화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함.

(1) 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조적·미장·방수공사업으로 함.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을 통합하여 기초·해체공사업으로 함.

(3) 지붕·판금공사업과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하여 건축물조립·판금공사업으로 함.

(4)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내지 제3종을 통합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함.

카.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등록기준을 조정함.

(1) 철도·케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

기준중 기술능력 등 일부기준을 완화함.

(2)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수목재배용 토지는 관상수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여야 하던 것을 등록 당시 수목재배용 토지로 이용되면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현행 제1종 내지 제3종)의 신청자격요건으로 일반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자본금 1억원을 갖추도록 보완함.

(4)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현행 제4종 및 제5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중복인정할 수 있도록 함.

타.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시공관리책임자의 경력이 있는 자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공관리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

파. 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하거나 부실시공의 정도가 경미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